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398

제출연월일 : 2008. 10. 27.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　　호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친절·공정)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·공정하고,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	제6조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《관 계 법 령》

□ 지방공무원법

第51條(친절·공정의 義務) 公務員은 住民전체의 奉仕者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執務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년 12월 1일

행정자치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10월 28일

3. 상 정 일 자 :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9차 행정자치위원회(2008. 12. 1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정하윤)

1. 제안이유

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함(안 제6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박춘용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공직자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공직자의 직무수행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Ⅳ. 토 론 요 지 : 생 략

Ⅴ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